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2. 17 선고 2019가단360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구민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이창희, 이성철

변 론 종 결 2022. 1. 27.

판 결 선 고 2022. 2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진주시 D 답 2,639㎡ 및 E 답 2,929㎡에 관하여 2017. 8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. 8. 18. 접수 제48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는 C에 대한 투자약정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,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.

그런데, 을 제10, 1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투자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, 위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5411)이 선고·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¹⁾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투자약정금 반환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판사 박성만

1) 또한 원고가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·확정되었다(부산지방법원 2020나60086).